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April 29th, 2024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2023년 APMA 프로그램 및 APA 통계 발표 (Announcement 2024-16)

미국 국세청(이하 "IRS")은 이전가격 사전합의 프로그램 (Advance Pricing and Mutual Agreement program: APMA program)'의 2023 년 연차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Announcement 2024-16)

해당 보고서는 이전가격 사전합의 프로그램의 개괄적인 통계, 거래유형, 이전가격 산정방법 등을 설명하는 25 번째 보고서이며, 정상가격원칙 적용에 관한 지침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번 연차보고서 발표(Announcement 2024-16)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기준, 타결된 APA는 총 156 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2023년 기준, APA 갱신 비율은 47%로 2022년 55%에서 소폭 하락함
- 2023년에 타결된 APA의 절반 이상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해외 모회사와 미국 자회사 간 거래였음

- 2023년에 타결된 APA 대상 거래 중 대부분은 유형자산 판매 또는 용역 제공 과 관련되었으나 18%는 무형자산의 사용과 관련됨 (APMA 프로그램 중 가장 어려운 유형의 거래였음)
- 2023년 기준, APA 타결까지는 평균 42개월이 소요되어 2022년 43.4개월 대비 소폭 감소함

[KPMG 의견]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총 156건의 APA가 타결되어 APMA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COVID-19의 영향으로 APA 타결이 지연되었던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2020년 타결 건수인 127건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 167건의 APA가 접수되는 등 APA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APMA 프로그램의 높은 실적은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APA 통계]

구분	일방	쌍방	다자간	합계
접수 (filed)	17	144	6	167
타결 (executed)	24	130	2	156
2023년말 기준 진행 (pending)	44	480	34	558
2023년말 기준 갱신(Renewals)	15	59	-	74
갱신진행 (renewals pending)	33	139	20	252
취소 (revoke or cancelled)	-	-	-	-
철회 (withdraw)	2	11	0	13

대한민국: 필라2 규정 개정안 발표

2024년 2월 27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 후속 개정안을 통해 한국형 필라 2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개정안(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금번 개정안에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서식이 신설되어 24년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26.6월 최초신고)를 위한 전 세계 공통 신고 서식(GIR: GloBE Information Return)이 마련되었으며,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GIR 및 추가세액신고서 서식도 신설되었습니다. GIR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2023년 7월, OECD에서 발표한 표준 GIR의 정보와 일치합니다.

[추후 일정]

- 국내 글로벌최저한세규정은 완전히 법제화되었으며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및 주석서, 2023년 2월과 7월에 발표된 행정지침에 포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2023년 7월에 발표된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면제와, 같은 해 12월에 업데이트된 행정지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 개정안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 이후 적격소재국추가세 제도(QDMTT) 도입에 대한 공식 발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17 중 0661 (2024.02.19)

제목: 청구법인과 국내법인이 체결한 협업계약 등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연구개발 등을 지시·승인하면서 연구개발비를 분담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휴기술을 공동소유권을 가지고 각자의 판매지역별 판매권한을 가지는 등 청구법인은 사실상 국내법인과 국내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기각)

1) 처분개요 및 주요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이탈리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이고, ○○○은 독일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같은 업을 영위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로, 청구법인과 ○○○은 ○○○그룹의 구성원임.
- 청구법인 및 ○○○은 2001.4.30.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a(이하 "a한국") 및 네덜란드 법인인 ○○○과 5대 소아질환 예방을 위한 혼합백신 개발과 관련하여 협업계약(이하 "이 사건 협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 및 ○○○이 4가지 병원균에 대한 항원원재료를 생산하여 a한국에 인도하면, a한국은 위 항원원재료 및 B형 간염 관련 항원원재료를 배합하여 5가 백신인 ○○○(이하 "이 사건 ○○○")을 생산·판매하며, 청구법인 및 ○○○은 4가지 항원원재료를 공급하는 대가로 a한국으로부터 '4가지 항원원재료의 제조원가에 a한국이 판매한 이 사건 ○○○의 매출총이익률의 60%를 가산한 금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사건 협업계약에 따라 a한국과 합작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형성하였음에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된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법인세 합계 ○○○원을 결정·고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2) 쟁점

- ① 청구법인이 국내법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업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을 산정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p>「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를 볼 때 청구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인정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나, 청구법인과 a한국은 해당 신청을 하지 않아 위 제도는 적용불가함 - 동업관계만으로 국내사업장을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조약 원칙을 위배함 - 청구법인과 a법인은 공동 R&D 활동을 하고 원재료를 공급했을 뿐, 금전/재산/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이익/손실을 배분하는 '동업기업'으로 보기 어려움 -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뿐, 각자의 사업을 각기 자산을 소유하며 운영하므로, 동업기업의 요건인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음 	<p>청구법인은 이 사건 협업계약을 통해 a 한국과 국내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사업인지 판단할 때에는 계약서 형식이 동업/조합 계약의 형태인지 뿐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또한 조합계약의 형태와 엄밀히 부합하지는 않더라도 공동사업의 핵심속성인 공동출자와 손익의 배분이 존재하는 한 공동사업으로 봄이 타당함 - 청구법인과 a한국은 다음과 같이 협업형태를 이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연구개발비용을 6:4로 부담)가 이루어졌고 출자비율에 따라 손익을 분배함 2)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이 있음(특정 계약서에 리콜의 경우 공동으로 비용/경비 부담하는 문구가 있으며, 실제 신갈공장 지연폐쇄에 따른 손실을 배분하기도 함) 3) 이 사건 협업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에 사용된 협업기술을 합유형태로 소유함 4)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동으로 사업운영에 직접 관여함 - 협업 당사자 모두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주체로 표현됨(이 사건 000 제품에 각자의 상호를 표기, 각기 다른 지역에서의 판매함으로써 제품판매의 주체로 활동)
<p>청구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a 한국의 사업장을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000의 판매에서 발생한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해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이탈리아 조세조약 및 한-독일 조세조약 상, 청구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이상, 이 사건 000 판매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음 -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인정되려면 국내에 사업의 전부/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존재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국내에 사업장 또는 종속대리인에 의한 국내 사업장이 없으며, a한국의 사업장은 계약상대방에 불과함 	<p>청구법인은 a 한국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며 국내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뜻함 - 국제청 행정해석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국내에 공동사업자를 통하여 외국법인 사업의 전부/일부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는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함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4에서는 공동사업과 유사한 동업기업에 대해서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장소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함. 따라서, 공동사업에서도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장소를 구성원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함
<p>4 가지 항원원재료에 적용된 이전가격은 국조법의 이익분할법에 따라 책정된 것일 뿐, 해당 사실만으로 사업의 손익이 공유되며 공동사업을 한다고 주장할 수 없음</p>	<p>(없음)</p>

4) 판단

-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a한국 등이 이 사건 000의 공동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서 이 사건 협업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예산수립, 제품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관리, 가격정책 검토 등을 지시하고 승인하도록 하였던 점, 청구법인 및 a한국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000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연구개발비를 6:4의 비율로 분배하였던 점, 이 사건 협업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 및 a한국 등은 자신의 이름으로 각자의 판매 및 시판지역에서 모든 시판권한을 유지해야 하고, 제휴기술은 공동 소유권을 가지며, 제휴 재료를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및 a한국 등 간에 체결된 2013.2.1. 화해합의서에 의하면 이윤과 투자의 합의비율을 평등한 협력관계를 반영하여 변경한다거나 각 당사자가 협업계약을 통해 기여한 가치를 반영하도록 영업 및 이익의 배당을 재조율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 당사자들은 사실상의 공동사업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a한국과 국내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조심 2018중4437, 2020.6.8. 같은 뜻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03 관세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제품 수입 규제 및 관리 프로세스 동향

1. 미국의 중국산 철강 보복관세 인상 예고

(1) 개요

지난 4월 17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서고, 미국 철강 및 조선 산업을 지지하기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 7.5%에서 25%로 약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 대중 추가관세 부과대상인 철강·알루미늄 제품 (현행 7.5%)

바이든 대통령이 25%로의 보복관세 인상을 촉구한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현재 미국이 Section 301에 따라 7.5%의 보복관세 부과 중인 72류(철강), 73류(철강제품), 76류(알루미늄) 물품(List 4A)입니다. USTR Section 301조 홈페이지에서 8단위 HS Code 기준 상세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통한 한-미 철강 통관 프로세스 구축

지난 4월 6일,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철강 수출승인 및 수입통관에 대한 전자문서교환시스템(eCERT)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CERT은 한국, 미국의 관세청과 한국 철강협회 수출쿼터 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철강의 통관상태, 승인수량 및 잔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 방지 등의 목적으로 구축되었습니다.

eCERT은 美 연방관보에 공고된 이후 15~45일 사이의 계도 기간을 거치게 되며, 동 계도기간 이후 부터는 eCERT 활용이 필수로 전환됩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 쿼터 제품의 경우 수출승인서가 있는 경우에만 수출신고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한국 세관으로의 수출신고 이전에 eCERT를 통한 수출 승인서 수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철강협회가 발급한 수출 승인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미국 CBP에게 자동 송부되며, 미국 CBP에 의해 수입통관절차에서 수입신고서와 대조·검증을 받고 통관 승인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KPMG 의견]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미국의 대응조치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산 제품 우회수출 여부에 대한 미국 세관(CBP)의 검증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미국 철강 수출업체들은 미국 세관(CBP)의 우회수출 검증에 대비하여 철강·알루미늄 원자재 Supply chain에 대한 정보, 한국 내에서 충분한 가공이 이루어졌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검증 대응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사전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